

고성군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450호)

심사보고서

1997. 11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11. 22

고 성 군 수

나. 회부일자 : 1997. 11. 24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7. 11. 27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- 분뇨수거료, 정화조 청소요금이 90년 이후 동결되어 청소 대행업체의 부당요금 징수, 수거지연, 청소기피 등 청소업무 지장초래
- 분뇨 처리비는 분뇨 처리시설 운영비의 3.9%에 불과함.
- 청소업체의 요금 상향조정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분뇨 처리시설 운영의 적자 일부 개선
-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징수교부금의 지급근거가 불명확 하므로 징수교부금 지급조항의 폐지

3. 주요골자

- 가. 조례 제12조제1호의 별표 3에서 0.1㎥의 분뇨 수수료를 840원을 1,200원으로 조정.
- 나. 조례 제12조제2호의 별표 4에서 0.75㎥의 정화조 수수료의 기본요금 10,480원을 12,000원으로 조정하고 초과요금 0.1㎥당 780원을 1,028원으로 조정.
- 다.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금액의 10%의 지급근거인 조례 제15조 외 폐지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1990년 이후 분뇨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동결되어 청소대행업체의 적자운영에 따른 부당요금징수, 수거지연 등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분뇨처리장 운영적자를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축산폐수도 처리하는가

그리고 축산폐수와 오수의 차이는

- 답 : 축산폐수는 처리하지 않으며, 축산폐수는 가축의 분과 높을 말하며 오수는 일반 가정의 오물 및 분뇨를 말하며, 폐수는 오염물질을 함유한 물질의 통칭임.

- 문 : 위생사업소 2개소의 사업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

- 답 : 기존 고객의 계속 사용과 신규업체 처리의 홍보와 서비스 등 주민의 선호에 차이가 나고 있다.

- 문 : 위생처리장의 수입은

- 답 : 예산 1,560만원인데 10월말현재 1,200만원 정도이며, 금년 목표달성을 무난함.

- 문 : 군부대 분뇨 처리는

- 답 : 군부대 자체적으로 위생사업자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다.

- 문 : 수수료 징수교부금 제도를 폐지할 경우 업체 반발은

- 답 : 조례상 지급근거를 폐지하면 징수교부금 청구제도가 없으며 위생사업자의 반발로서 사업의 기피 또는 파업시는 특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업체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.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7. 11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